

#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1. 26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11.1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4.11.21.
-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4.11.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 은 영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명을 간결하게 수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모자복지법」 제1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3)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에 대한 우선계약대상 추가(안 제1조)

- 서울지방보훈청의 권고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계약대상에 추가

4) 계약의 해지기준을 신설(안 제6조의2)

5) 우선계약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세부 평가기준 추가(안 별표)

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업 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서울지방보훈청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범위 착오사항 수정의견” 송부 등에 따라 조례안 [별표]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생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안 제5조제1항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각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